



西獨 改正登録 意匠法(2)

디자인登録對象 및 出願書類等

I. 登錄디자인으로 保護받을 수 있는 것

종전과 같이 다음의 條件이 充足되는 경우에 登錄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1. 登錄對象

등록디자인보호의 對象은 시각에 의해 감지되는 대표의 형태에 대한 사람의 美感을 자극할 목적으로 또 그것을 자극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2차원 혹은 3차원의 상업적 고형물품의 색채와 型(모델)의 외관이며 再現性이 있어야 한다.

타이프페이스에 대한 디자인保護는 타이프페이스法의 條件에 따라 주어진다.

2. 新規性

디자인(평면형)이나 型(3차원의 對象)이 등록을 받으려면 출원 당시에 新規해야 한다.

즉 보호를 요구하는 물건의 외관이 출원 당시에 그 부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者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러한 자가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알아내리라고 합리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3. 獨創性

디자인 혹은 型은 색채의 그 創作性에 있어서 특히 통상의 기술자의 디자인에서 알려진 기술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상업상 有用性

상업적으로 유용한 경우, 즉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型에 대해서만 保護가 되어진다.

5. 심사범위

1988년 7월 1일부터는 의장동특부판리책임을 맡고 있는 특허청부서만이 등록조건으로서 출원의 공식요건들이 충족되는가를 심사한다. 그러나 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이나 型이 실제로 1~4항의 실체적 등록요건들을 충족시키는가는 심사하지 않는다.

II. 독일특허청에 유효한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할 사항

1. 등록청구

記載事項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디자인출원 대상의 설명이나 명칭
- 회사 혹은 사업체 등록번호
- 물품분류 디자인이나 型이 他物品分類上의 物品에까지 미치거나 그러한 물품에 옮겨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추가해야 함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유익하다.
- 예를들어 벽지무늬, 직물무늬 같은 경우처럼 출원된 물품의 외관이 원래의 평면 전본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또 이대로 출원해야 할 경우 출원된 물품의 표면외관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 의장이 3차원(입체)형태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래의 표면 외관에 특히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型의 3次元형태(입체모양)뿐

- 만 아니라 그 표면구성에 대해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원모형의 기탁에 의해서만 충분한 보호가 보장되는지 여부(정당함을 밝혀야 하는 하나의 예외이다)
- Geschmacksmusterblatt (디자인공보)에 계재를 위해 사용할 표현이 어느 것인지
- 출원인이 디자인이나 型의 라이선스 허락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이 선언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請求事項

- 우선권(외국우선권 또는 전시우선권)

기타事項(가능한 경우)

- 한개 이상의 디자인이나 型의 경우에 연합출원으로서의 등록(최대 50개의 디자인이나 型까지 연합출원이 가능함)
- 디자인공보에 디자인이나 型의 표현 공개를 지연(최고 출원일자로부터 18개월)
- 디자인공보에 색채로 그 표현을 공개
- 디자인이나 型의 설명을 공개(의무적인 것은 아님)

2. 디자인이나 型의 표현

등록디자인법에 따라 보호를 요구하는 디자인이나 型의 형상이 명백하고 완전하게 開示되어야 한다. 디자인이나 型의 표현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건을 구비한 디자인이나 型을 표현한 것이 출원일에 出願書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후에 보정서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나 型은 사진이나 기타 도면으로 例示한다.

(예 : 선도면)

- 물품의 표현에는 통일성에 반하는 추가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
- 디자인이나 型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여러개의 例示로도 表現할 수 있다(각 3매씩)
- 디자인이나 型의 세부사항에 대한 補完例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 물품의 표현은 색채 또는 흑백 공히 가능

— 物品을 재현한 것 위에 또는 인접한 곳에 직접적으로 설명이나 칫수를 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물품의 표현은 $4 \times 4\text{cm}$ 보다 적어야 한다.
- 도면이나 사진은 DIN A4($21 \times 29.7\text{cm}$)보다 커서는 안된다.

b) 어떤 물품의 표면외관에만 디자인 등록법상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진 혹은 기타 도면의 例示 대신에 그 물품 자체의 평면샘플 혹은 그 일부분만으로 디자인이나 型을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을 예를 들면 옷감, 피복, 벽지, 평면의 세라믹 혹은 금속의 물품들이다.

이와 같은 평면샘플은 다음의 要件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각 디자인 또는 그 일부에 대해 평면 샘플에 의한 표현은 하나만
- $50 \times 100 \times 2.5\text{cm}$ 혹은 $75 \times 100 \times 1.5\text{cm}$ 보다 크지 않을 것
- DIN A4($21 \times 29.7\text{cm}$)로 접을 수 있을 것
- 포장을 포함해서 총 중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c) 출원인이 型 또는 그 자체의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 또는 그 모형 자체를 가지고 보호를 청구하는 특성을 명백하고도 완벽하게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청은 모델 그 자체를 표현으로 인정한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型의 사진 혹은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의 세출(3부)
- 型의 크기는 $50 \times 40 \times 40\text{cm}$ 이내, 포장포함 총 중량이 10kg이내일 것
- 왜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이 공개로서 부적합한가에 대한 서면이유서
- 타이프레이스의 例示 및 그 타이프레이스로 제작한 3線책에 관해서는 사진 혹은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에 관한 위 언급사항이 적용된다.
-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다. 단, 100단어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되며 연합출원의 경우에는 200단어를 초과하지 못한다. <계속>